

# 정보공개지침

제정 2006. 3. 22

전문개정 2013. 8. 30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절차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기정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기정원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전담하고 정보공개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관리 등 당해 정보를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제 2 장 정보공개제도 운영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원장은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본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교육·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

여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목록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는 처리부서에서 결정하고 주관부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구체적인 공개 범위 및 방법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처리부서는 그 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④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소재안내로 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제 2호와 같다.

② 청구된 정보가 별표 제2호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정보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주관부서에서는 청구된 내용을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별지 3호 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처리 등)** 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처리부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

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청구인에게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1호의 서식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⑦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⑧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지정원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관련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정보공개 시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정보공개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적용하되, 이미 작성된 자료 또는 소량의 정보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등 업무부담이 경미한 정보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3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기정원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부서장이 된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는 안전에 관한 처리부서의 담당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자를 지정 한다.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가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심의회는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다.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제13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 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서면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심의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06. 3.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 사전공표 대상 정보목록

단위업무	공개내용	공개장소	공개주기(시기)	담당부서
R&D 지원사업	사업계획	홈페이지	연1회(수립 후 즉시)	기술기획부
	지원대상선정결과	홈페이지	연1~2회(선정 후 즉시)	기술평가부
정보화 지원사업	사업계획	홈페이지	연1회(수립 후 즉시)	경영정보화부
	지원대상선정결과	홈페이지	연1~2회(선정 후 즉시)	
경영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	홈페이지	연1회(수립 후 즉시)	
	지원대상선정결과	홈페이지	연1~2회(선정 후 즉시)	
인력 지원사업	사업계획	홈페이지	연1회(수립 후 즉시)	기술인재양성부
	지원대상선정결과	홈페이지	연1~2회(선정 후 즉시)	
경영공시	주요경영공시사항	홈페이지	연1회(3월)	기획관리부

[별표 제2호]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①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②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④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⑥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①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②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③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④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⑤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⑥ 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⑦ 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 ③ 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 ⑤ 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 ⑥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 ⑦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 ②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③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④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불시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패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③ 임직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④ 임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⑤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⑥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 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⑦ 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⑧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위

①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특정 임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⑥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①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 ②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별지 1호 서식]

##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성명:	주 소	
건 명			
주요내용			
심의요청 사 유			
기 타 (참고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 의견청취서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			
(서명)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귀하			



